#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1.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발 의 자**: 이민옥 의원

#### 2. 제안이유

성동구 장애인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주변인들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고유한 언어형식 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 (안 제5조)
- 다. 농인등의 편의증진 (안 제6조)
- 라.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안 제7조)
- 마. 민간에의 권장 (안 제8조)
- 바. 표창 (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한국수화언어법」제4조. 제16조
  - 2) 「장애인복지법」제9조
-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라. 입법예고(2020. 11. 12.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성동구 장애인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 형식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구청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농인등의 지원과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민간에의 권장과 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우리 구에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은 1,719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수 11,473명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한 총 63개1)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은 열악한 편으로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인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에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sup>1)</sup> 광역자치단체(14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49개): 서울 강동·강북·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성북·송파·양천· 영등포·은평·종로·중구(18), 인천 강화군·계양구(2), 대전광역시 동구·대덕구(2), 대구 동구·수성구(2), 부산 금정구·동래구·서구(3), 경기도 남양주시·안성시·양평군·오산시 (4), 강원도 삼척시(1), 충남 논산·당진·서산·아산·천안시·홍성군2(7), 충북 제천시·진 천군(2), 전북 군산·익산·전주시(3), 경북 경산·영주시(2), 경남 거제·밀양·사천시(3)

하여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제정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접근권, 사회참여권 등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취지와 관련 규 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참고 : 성동구 장애인 등록 현황(2020. 10말 기준)

(단위: 명)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11,473	5,267	1,177	1,613	106	705	1,184	178	425	472	35	311

## ※ 참고: 성동구 수어통역센터 현황

○ 개 소 일: 2001. 1. 11.

○ 위치·규모: 성동구 청계천로 516, 생활회관 3층, 68.5 m²

○ 인 력: 5명(센터장1, 한국수어 통역사 4)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지회장 박윤호)

○ 예 산: 229,265천 원(시비100%, 재배정)

○ 사업내용: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문자서비스, 수어교육 등